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민 사 부

화해권고결정

사 원	건 고	2015가합207194 손해배상(기)
		1. 강석영 서울
		2. 강순문 전주시
		3. 강현선 남양주시
		4. 고범수 충북
		5. 고용택 제주시
		6. 광제복 청주시
		7. 구천희 공주시
		8. 권영환 의왕시
		9. 김기문 광주
		10. 김낙영

- 보령시
11. 김동윤
경남
 12. 김분순
서산시
 13. 김상섭
군포시
 14. 김상옥
광주
 15. 김선엽
순천시
 16. 김순덕
광주
 17. 김순복
광주
 18. 김순자
대구
 19. 김영자
전주시
 20. 김용광
충북
 21. 김윤배
광주
 22. 김정희
경북
 23. 김진구

서울

24. 김찬옥

부산

25. 김찬태

김해시

26. 김태욱

부천시

27. 김태훈

부천시

28. 김해진

창원시

29. 김형웅

충남

30. 김형준

인천

31. 김희숙

전주시

32. 나기남

대전

33. 민영관

부천시

34. 박남숙

대구

35. 박동희

파주시

36. 박영수

- 안양시
37. 박은하
전주시
38. 박정일
경남
39. 박진태
서울
40. 서영봉
부산
41. 서한동
광주
42. 설재두
전주시
43. 송길영
청주시
44. 송영세
청주시
45. 송우진
천안시
46. 송재석
서울
47. 송준필
울산
48. 신기철
인천
49. 신만식

- 안산시
50. 신미호
청주시
51. 신상호
성남시
52. 신선호
서울특별시
53. 신정임
충주시
54. 심우민
서울특별시
55. 안영미
광주광역시
56. 안임현
서울특별시
57. 엄장용
서울특별시
58. 오상희
수원시
59. 원병희
전주시
60. 원영귀
서울특별시
61. 유승택
청주시
62. 유양자

- 서울 북
63. 유영란
광주 서
64. 유인전
서울 광
65. 옥춘임
청주시
66. 윤석화
인천 남
67. 윤영현
충북 진
68. 이경애
부천시
69. 이경환
서울 강
70. 이경훈
춘천시
71. 이미자
전주시
72. 이병옥
서산시
73. 이병천
안양시
74. 이상준
서울 강
75. 이영근

- 서울 동
76. 이영자
서울 성
77. 이영주
수원시
78. 이은중
남양주시
79. 이재선
광명시
80. 이재숙
서울 서
81. 임병석
서울 노
82. 임순택
광주 북
83. 정득춘
부천시
84. 정연용
서울 성
85. 정영환
인천 부
86. 정진애
서울 동
87. 정향순
전주시
88. 조백동

- 서울 중
- 89. 조영희
순천시
- 90. 조재환
대구 동
- 91. 조정희
김제시
- 92. 조태욱
서울 용
- 93. 차경근
서울 노
- 94. 최광식
수원시
- 95. 최영만
익산시
- 96. 최종기
서울 도
- 97. 최학규
서울 강
- 98. 최희성
서울 광
- 99. 한상덕
용인시
- 100. 한일권
안양시
- 101. 황노성

호

전남 완도

102. 황은숙

광주 북구

103. 황응하

대구 수성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 고 주식회사 케이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KT본사)

대표이사 황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정현, 구교웅, 도주호, 박기영, 장상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5,150,000원을 2018. 6. 15.까지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4. 25.

재판장 판사 김 태 균



 판사 김 선 역



 판사 서 진 희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KT(이하 '피고')은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 및 전국 각지에 마케팅단 및 지사를 두고 노동자 약 3만 여 명을 고용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전원 피고 회사가 원고들 몰래 불법적으로 시행했던 부진인력 관리(퇴출대상자)로 선정되어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들이고, 원고 김태훈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 사망한 김태훈의 법정 상속인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가. 주장 요지

피고는 회사 내 근로자들 중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직원,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002명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하여 회사 차원에서 근로자들 몰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한 다음, 이들에 대한 퇴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적인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인권침해적인 인사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조치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헌법 제11조가 선언한 평등의 원칙,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취지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에게는 그와 같은 점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도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관련 선행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

피고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이 불법적인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관련 선행사건(불법적으로 부진인력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후 2009년도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 부여하여 임금을 삭감한 사건)에서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인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2015. 6. 24.자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2195 판결문 / 갑 제1호증의 2,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나6377 판결문).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까지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일 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정본입니다.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원주사 이내석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